



올해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 본격 추진

- 2월 1일부터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괄 인증 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녹색제품 구매법」(약칭)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대상인 ①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GR) 인증 신청·접수(유효기간 연장 포함)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용후 자동차부품(범퍼 등)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 품질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②재제조하는 친환경제품 인증을 연중 상시로 신청·접수 받아 인증부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연 2회 정시 인증 신청·접수하여 ▲인증 심사·평가기간 지정*을 통해 예측 가능시기(6월초)에 인증을 부여하여 공공기업 의무구매 등 판로 개척을 조속히 지원하는 한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통해 인증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다수 품목인증 보유기업 일괄 신청 포함)

* (서류·면접심사) 30일 이내, (현장심사) 60일 이내

또한,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은 작년까지 인증 신청·접수는 국가기술표준원, 심사·평가는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인증서 발급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는 신청·접수·심사·평가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원화하여 연중 상시 신청·접수함으로써 기업의 인증신청 기회 확대 및 편의성 등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GR)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 보유한 인증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위한 조달심사 가점 부여, ▲재제조 원자재 수급지원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판로 지원시책 등을 지속 발굴·추진하는 한편, 특히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재제조 친환경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으로 지정하는 「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GR)과 재제조 친환경제품의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GR제품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buygr.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정두식 (043-870-5500)
		담당자(재제조)	사무관	정기택 (043-870-5509)
		담당자(GR)	연구사	박재우 (043-870-5506)

2024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1차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접수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우수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 1차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2024. 2. 1.

국가기술표준원장

1 인증 신청·접수

- (신규 인증) 붙임의 GR인증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GR인증을 「GR 인증요령」 제4조(인증의 신청·접수)에 따라 신규로 받고자 하는 기업
- (품목추가 인증) GR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동일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해 「GR 인증요령」 제4조의2(품목추가 인증)에 따른 해당 GR인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기업
- (인증 유효기간 연장) 「GR 인증요령」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에 따라 GR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유효기간이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종료되어 2024년 7월 31일까지 GR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2 인증 심사·평가

- 「GR 인증요령」 제5조(인증심사의 방법) 및 해당 신청제품의 GR인증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평가 실시

- GR인증 품질인증기준은 GR인증제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buygr.or.kr>)에서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고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접수기간) 2024. 2. 1. ~ 2024. 3. 15.
 - 2. 인증 심사·평가를 거쳐 6월 초에 GR인증서가 부여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5. 인증 신청·접수 및 문의처 참고)
- (제출서류) 신청서식은 GR인증제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buygr.or.kr>) /바로가기 인증요령/신청양식 참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식	1.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자료) 2. 공인 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1부 5.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1년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6.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재활용 원료 거래명세서, 입고대장) 7.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에 한함) 8.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9. 현장배합시방서(재활용원료 사용비율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

- (기타사항)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마감일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고, 평가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한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고,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스스로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 본 공고 외의 사항은 「GR 인증요령」을 따른다.

4 인증 심사·평가비용 및 일정

- (심사·평가비용) 심사·평가수수료 없음. 다만, 「GR 인증요령」 제8조(제품 심사)에 따른 제품심사에서 소요되는 시험수수료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심사·평가일정) 아래와 같은 심사·평가일정으로 하되, 심사·평가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평가 내용	일정
① 2024년도 GR인증 신청·접수 공고 ※ GR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대상기업은 개별 안내할 예정	2.1 ~ 3.15
↓	
② 인증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인증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또는 신청 반려 예정	~ 3.22
↓	
③ 신규인증 신청품목별 평가위원회 개최 ※ 품질의 우수성, 기술성, 환경성 및 자원순환 파급효과를 심사·평가, 다만,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의 품목추가 신청은 면제	~ 4.5
↓	
④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 실시 ※ 기술심사, 품질관리심사 병행, 제품 성능시험 평가(국가공인시험기관),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의 품목추가 신청 모두 해당	~ 5.17
↓	
⑤ 심의위원회 개최 ※ 인증 심사·평가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인증 부여 여부 결정	~ 5.31
↓	
⑥ GR인증 심사·평가결과 공고	6월초

5 인증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접수 및 문의처)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인증사무국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910호
 - (전화) : 02-538-6536~7 / (FAX) 02-538-6535

2024년 재제조제품(REMAN) 품질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접수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제조제품을 인증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기술 경쟁력 강화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재제조제품 (이하 “REMAN”)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2024. 2. 1.

국가기술표준원장

1 인증 신청·접수

- (신규 인증) 붙임의 REMAN인증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REMAN인증을 「REMAN 품질인증요령」 제13조(품질인증의 신청·접수)에 따라 신규로 받고자 하는 기업
- (품목추가 인증) REMAN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동일한 공정으로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재제조제품에 대해 「REMAN 품질인증요령」 제13조의2(품목추가 인증)에 따른 해당 REMAN인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기업
- (인증 유효기간 연장) 「REMAN 품질인증요령」 제21조(품질인증의 연장 심사)에 따라 REMAN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유효기간이 90일 후에 만료 되어 REMAN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

2 인증 심사·평가

- 「REMAN 품질인증요령」 제14조(품질인증심사) 및 해당 신청제품의 REMAN인증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평가 실시

- REMAN인증 품질인증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에서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고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음

3 신청·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접수기간) 수시접수
-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5. 인증 신청·접수 및 문의처 참고)
- (제출서류) 신청서식은 GR인증제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buygr.or.kr>) /바로가기 인증요령/신청양식 참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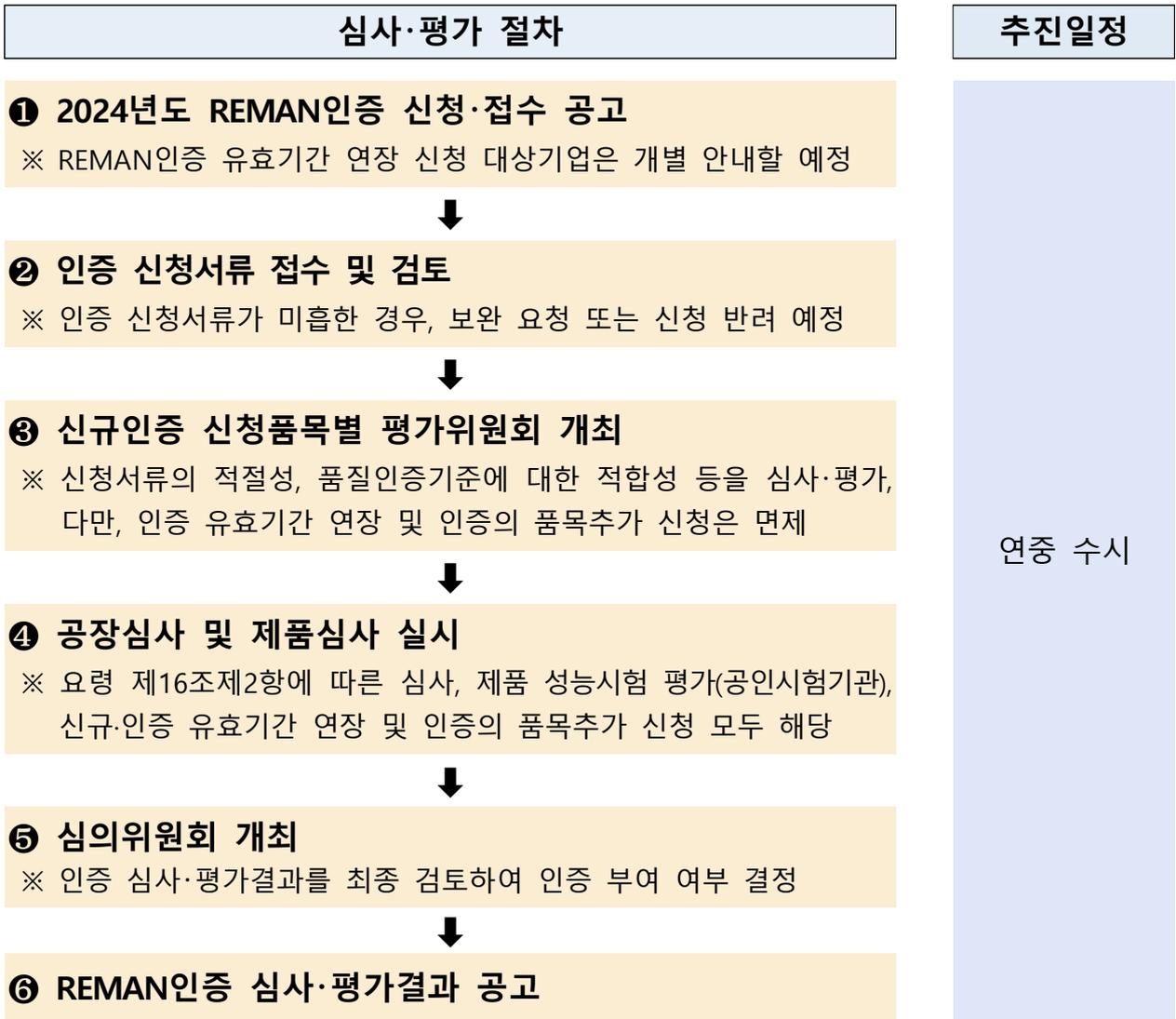
구 분	제출서류
신청서식	1. 재제조제품(REMAN)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1. 신청 재제조제품에 관한 설명서(첨부자료 참조) 1부 2. 신청 재제조제품의 교체부품 내역에 관한 서류 1부 3.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기타사항)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단, 서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고,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스스로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의 사항은 「재제조제품(REMAN) 품질인증요령」을 따름

4 인증 심사·평가비용 및 절차

- (심사·평가비용) 심사·평가수수료 없음. 다만, 「REMAN 품질인증요령」 제17조(제품심사)에 따른 제품심사에서 소요되는 시험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 (심사·평가절차) 신청접수된 제품은 아래와 같은 심사·평가절차에 따름



5 인증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접수 및 문의처)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인증사무국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910호

- (전화) 02-538-6536~7 / (FAX) 02-538-6535